

입법예고 중법령명	중단교무금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		
담 당	포교원 포교부 포교팀 (02-2011-1895)	입법예고일	2025년 2월10일 ~ 3월 1일

### 1. 이유 및 취지

- 중앙중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, 교무금의 수입을 신도증 관련 사업 유지를 위한 비용과 포교·신도교육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중앙중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신도교무금 조정위원장을 포교원장에서 총무원장으로 자구 수정함(제5조의2 개정).
- 나. 교무금 수입을 신도증 관련 사업 유지를 위한 비용 충당과 포교·신도교육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책정하도록 함(제8조 제2항 개정).

### 3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5조의2(신도교무금 조정위원회의 구성) 본법 제5조의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로 신도교무금조정위원회를 두며, 포교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포교원장</li> <li>2. 총무부장</li> <li>3. 재무부장</li> <li>4. 포교부장</li> <li>5. 중앙중회 포교분과위원장</li> <li>6. 중앙중회 재정분과위원장</li> <li>7.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위원장</li> <li>8. 중앙신도회 회장</li> <li>9. 포교사단장</li> </ol>	<p>제5조의2(신도교무금 조정위원회의 구성) 본법 제5조의 사항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로 신도교무금조정위원회를 두며, <b>총무원장</b>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총무원장</b></li> <li>2. ~ 6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7. <b>문화유산보유사찰위원회</b> 위원장</li> <li>8. ~ 9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8조(교무금의 사용 내역) ① 재적사찰은 납입된 교무금을 포교, 신도 관리, 신도 교육을 위한 기금</p>	<p>제8조(교무금의 사용 내역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중앙중무기관은 교무금 수입을 신도증 관련 사업유지를 위한 비용충당과 포교·신도교육·사회·복지·문화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책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신도등록사업의 주무부서는 신도등록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교무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.</p> <p>④ 중앙중무기관은 회계연도의 교무금 사용 내역을 정기 중앙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② 중앙중무기관은 교무금 수입을 신도증 관련 <b>사업 유지를</b> 위한 비용충당과 <b>포교·신도교육 사업을</b> 위한 기금으로 책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부칙&lt;불기2569(2025).00.001&gt;</b>  <b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b></p>